

[별표 1의3] <신설 1999.7.1, 2006.5.3>

행정처분기준(제12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며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의 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.

(1)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(2)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6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으로 경감할 수 있다.

라.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
2. 위반행위별 처분기준

위 반 행 위	관 련 법 규	행 정 처 분 기 준	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위반	4회위반
1.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	법 제8조제1항제3호	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	허가취소
2.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	법 제8조제1항제4호	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	허가취소
3.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	법 제8조제1항제6호	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	허가취소

4.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가격의 최고액에 위반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때	법 제8조제 1항제7호	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	허가취소
5.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기준에 미달되도록 품 질을 저하시키거나, 품 질기준에 미달되는 액 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 으로 저장·운송 또는 보관한 때	법 제8조제 1항제8호 및 법 제27 조제3항	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	허가취소	
6.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다른 명령에 위반한 때	법 제8조제 1항제8호	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	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	허가취소